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이채익・이명수・추경호

권은희 • 전봉민 • 정희용

홍준표 • 박성민 • 권명호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추가적인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여 운전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게 될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위반사항 또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부과받는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

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 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 제2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후단 중 '제4호까지에'를 '제5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사람. 다만,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생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
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u>제4호까지에</u>	경우 제2호부터 <u>제5호까지에</u>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
	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
	게 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
	내의 사람. 다만,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
	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
	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